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 제공 항목과 제공의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규정(안 제28조의3 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시

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정보 규정(안 제28조의3 제2항)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와 제공 시점 명시

다.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3 제3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23.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절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중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중 구동축전지의 제조연월은 자동차를 인도하기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
 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
 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
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
공하여야 한다. 이 때,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통
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정보 확인 방법
과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
아야 한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공고
 2. 자동차 매매 계약서
 3. 자동차 인수증(구매자가 신차를 인수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
한다)
 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을 통한 방법
 5.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u> <u>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u> <u>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u> <u>호의 자동차 중 구동축전지를</u> <u>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외</u> <u>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u> <u>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u> 1.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u> <u>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u> <u>차</u> 2.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u> <u>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u> <u>드자동차</u> 3.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u> <u>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u> <u>자동차</u>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u>이륜</u> <u>자동차</u>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자 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중 구동축전지의 제조연월은 자동차를 인도하기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

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

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
를 이용하여 정보 확인 방법
과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
하고,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
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
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공고

2. 자동차 매매 계약서

3. 자동차 인수증(구매자가 신
차를 인수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을 통한 방법

5.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
법